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72,411,438	41,172,343
일반회계	1,249,726,847	37,491,805
특별회계	122,684,591	3,680,538
기타특별회계	122,684,591	3,680,538
공유재산관리	38,205,810	1,146,174
의료급여기금	5,576,925	167,308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319,000	39,57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244,902	7,347
교통사업	39,993,151	1,199,795
철도건설사업	11,716,659	351,500
폐기물처리시설	7,549,990	226,500
도시재정비촉진	1,281,662	38,450
도시개발	4,243,385	127,302
기반시설 설치	4,410,060	132,302
도시재생	8,143,047	244,29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1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811,819천원으로 한다.
(1)일반예비비 6,811,819천원
(2)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00천원

제 7 조 201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1,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